

# [상법강의교안 보조자료(2)]

## -2020년 법무사대비 상법판례 자료-

## -상법연습(문제집) 출간 공지 사항-

-하영태 박사 제공-

### <최신판례 OX자료 제공일정>

- ▣자료 I : **2019년(전체) ox최신판례지문=>20년 3월1일 (2면참조)**
  - ▣자료 II: 2018년(전체) ox최신판례지문=>20년 2월8일 제공함
  - ▣자료 III: 상법강의교안(하영태저: 2019년 초판) 정오표  
=>20년 2월 제공함=>**추가 수정된 내용 포함(12면참조)**
  - ▣자료 IV: **2020년(상반기) ox최신판례지문=>20년 6월 3일 제공**
- ※**최신판례해설**: 문제집강의(3월26일)와 최종정리특강(6월3일)

### <상법연습(문제집) 출간안내>

- ▣출간일: **2020년 3월5일**
- ▣구매처: 서울법학원 사무실(오프라인),  
박문각(에듀스파)인터넷서점(온라인)
- ▣강의일정: **20년 3월 26일 개강(서울법학원)**

### ▣상법연습의 특징 및 활용

#### □상법연습의 특징

##### <요약정리의 특징>

- 요약정리는 **조문이론요약**과 **판례요약**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 상법조문을 빠짐없이 읽기 쉬운 문장으로 정리하였다.
- 상법이론은 수험에 필요한 부분만 간략히 정리하였다.
- 판례지문은 내용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 **최신판례는 2020년 2월까지 확인하여 출제유형의 지문으로 정리**하였다.
- 중복되는 내용은 통합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정리하였다.
- 법무사 수험생의 **최종정리용으로 필요충분**하고 최선의 자료가 되도록 정리하였다.

##### <예상문제의 특징>

- 15년간 법무사 상법 기출문제를 분석(최근 경향에 맞게 변형)하여 수험에 필요한 지문은 모두 문제화 하였다.
- **별도의 기출문제풀이는 불필요(중복학습/시간낭비) 할 수 있다.**
- 상법조문 중 출제가능한 조문의 내용은 빠짐없이 문제화 하였다.

- 출제 가능한 판례는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최대한 문제화 하였다.
- **최신판례는 2020년 2월까지 확인**하여 예상지문으로 문제화 하였다.
- 중복되는 내용이나 지문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문제연습이 되도록 하였다.
- 문제의 구성은 상법조문 순서에 따라 편재하여 체계의 일관성과 검색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다.

### □ 상법연습의 활용

- 1단계: 문제풀기 전 <조문요약>과 <판례요약>을 장별로 편하게 3회 읽는다.
- 2단계: 요약내용 중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괄호나 밑줄로 표시하여야 한다.
- 3단계: 장별로 문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본다.
- 4단계: 오답지문과 애매한 지문은 체크 후 요약정리로 가서 재확인한다.
- 5단계: 요약정리에서 중복 체크된 지문은 상법강의(기본서)에서 확인하여 이해 하거나 암기하여야 한다.
- 6단계: 장별로 문제를 빠른 속도로 풀면서 복습 한다.
- 최종단계: 요약정리부분을 최종정리용으로 수회(多多益善) 반복하여 숙독한다.

### ※ 주의사항

□ 상법연습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고 수험에 꼭 필요한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틀리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지문은 반드시 기본서나 법조문을 통해 확인학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오답지문은 출제된다는 가정 하에 반드시 체크하여 반복 학습한다.

□ 본서에 대한 내용은 박문각(에듀스파)<sup>1)</sup>에서 동영상으로 수강할 수 있다.

□ 동영상강의와 병행을 하면 객관식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 자료 | : 2019년(전체) ox판례지문=>20년 3/1 제공

★1. 금융리스업자가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이와 별도로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 의무 또는 검사·확인 의무를 부담한다.( )

<정답>(X)

<해설>대판 2019.2.14. 2016다245418, 245425, 245432(금융리스계약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보면,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금융리스업자가 직접 물건의 공급을 담보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이와 별도로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 의무 또는 검사·확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1) 박문각(법무사 서울법학원): [http://www.pmg.co.kr/jehu/acad/sla/sub\\_main1.asp?flag=01](http://www.pmg.co.kr/jehu/acad/sla/sub_main1.asp?flag=01).

★2. A회사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 가운데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B회사를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법인격남용이 될 수 있고 A회사의 채권자는 B회사에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

<정답>(O)

<해설>대판 2019.12.13. 2017다271643(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이는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어느 회사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 가운데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3.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 그 제3자를 실질상의 주주로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와 주주명부상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인수와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 및 목적,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

<정답>(O)

<해설>대판 2019.5.16. 2016다240338.

4.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하고 있는 주권의 제시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

<정답>(O)

<해설>대판 2019.5.16. 2016다240338.

★5. 위조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해 타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경우, 실제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자는 회사를 상대로 직접 자신이 주주임을 증명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소의이익이 없다.( )

<정답>(O)

<해설>대판 2019.5.16. 2016다240338(확인소는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또한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자인데 위조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해 타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며 주주권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직접 자신이 주주임을 증명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甲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거나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6.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정답>(X)

<해설>대판 2019.5.16. 2016다260455[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 그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3항(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조 제2항(결의에 찬성한 자)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7. 주식회사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회사의 주주 중 1인에 대한 기부행위를 결의하면서 기부금의 성격, 기부행위가 회사의 설립 목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회사 재정 상황에 비추어 본 기부금 액수의 상당성, 회사와 기부상대방의 관계 등에 관해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사들이 결의에 찬성한 행위는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정답>(O)

<해설>대판 2019.5.16. 2016다260455.

**★8.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을 제시하는 등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한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명의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 )**

<정답>(O)

<해설>대판 2019.8.14. 2017다231980(회사는 명의개서를 청구한 자가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하면 족하고, 나아가 청구자가 진정한 주주인가에 대한 실질적 자격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을 제시하는 등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그 신청에 관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으며, 그에 따라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개서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9. 이사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 의 구성원이고,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

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정답>(O)

<해설>대판 2019.2.14. 2015다255258.

**★10.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된다.( )**

<정답>(X)

<해설>대판 2019.2.14. 2015다255258(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이사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에의 구성원이고,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11.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O)

<해설>대판 2019.7.4. 2017다17436(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12.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는 경우, 이사가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

<정답>(O)

<해설>대판 2019.7.4. 2017다17436(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성격이 동일하다. 다만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성격상 퇴직한 이사에 대해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므로, 이사가 재직하는 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이사가 퇴직하는 때에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긴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지급시기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정기적 보수 또는 퇴직금과 달리 권리자인 이사의 신청을 전제로 이사의 퇴직 전에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사가 중간정산의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

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3. 주식회사의 이사가 부담하는 대표이사과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할 의무의 내용 및 이러한 의무는 사외이사과 비상근이사는 부담하지 않는다.( )**

<정답>(X)

<해설>대판 2019.11.28. 2017다244115(주식회사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고,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사항에 관한 일체의 결정권을 갖는 한편,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에 관해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사회 참석 및 이사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사외이사라거나 비상근이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14. 주식회사에서의 이사회의 역할 및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

<정답>(O)

<해설>대판 2019.8.14. 2019다204463(주식회사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으나,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등 회생절차 신청 여부에 관한 결정이 주식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15.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정답>(O)

<해설>대판 2019.1.17. 2016다277200.

**16.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다.( )

<정답>(O)

<해설>대판 2019.4.3. 2014도2754.

★17.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정답>(O)

<해설>대판 2019.4.3. 2014도2754.

★18.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

<정답>(O)

<해설>대판 2019.4.3. 2014도2754.

★★19.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 이러한 법리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해지권 또는 취소권이 소멸되었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정답>(O)

<해설>대판 2019.4.3. 2014도2754.

★20.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최초 보험료가 납입된 때 또는 회사가 보험계약을 더 이상 해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지 않았을 때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다.( )

<정답>(X)

<해설>대판 2019.4.3. 2014도2754(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 이러한 법리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해지권 또는 취소권이 소멸되었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1. 보험자대위권의 행사범위는 보험계약의 목적이 되는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

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

<정답>(O)

<해설>대판 2019.11.14. 2019다216589(보험자대위권의 규정취지가 피보험자와 보험자 및 제3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위험을 분배하고자 하는 데에 있음을 고려할 때,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목적이 되는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자대위권 행사 범위는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2.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성질은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일 뿐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정답>(X)

<해설>대판 2019.4.11. 2018다300708(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

★23.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어야 한다.( )

<정답>(X)

<해설><정답>(X)

<해설>대판 2019.4.11. 2018다300708(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4.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



<정답>(x)

<해설>대판 2019.5.30. 2016다205243(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아닌 연 5%의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25.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 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개별 약정으로 태아를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할 수 있다.( )

<정답>(O)

<해설>대판 2019.3.28. 2016다211224.

★26. 계약자유의 원칙상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유효하고, 그 보험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기간이 개시된 이상 출생 전이라도 태아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

<정답>(O)

<해설>대판 2019.3.28. 2016다211224.

27.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이므로, 피보험자는 신체를 가진 사람(인)임을 전제로 한다(상법 제737조). 그러나 상법상 상해보험계약 체결에서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 )

<정답>(O)

<해설>대판 2019.3.28. 2016다211224.

28. 인보험인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객체'에 해당하여 그 신체가 보험의 목적이 되는 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을 의미하며,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 태아의 형성 중인 신체도 그 자체로 보호해야 할 법익이 존재하고 보호의 필요성도 본질적으로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보험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정답>(O)

<해설>대판 2019.3.28. 2016다211224.

★29. 약관이나 개별 약정으로 출생 전 상태인 태아의 신체에 대한 상해를 보험의 담보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보험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상법 제663조에 반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103조의 공

서양속에도 반하지 않는다.( )

<정답>(O)

<해설>대판 2019.3.28. 2016다211224.

30. 해상운송인의 요청에 따라 운송인이 부담하는 운송업무의 일부를 그의 보조자로서 수행하는 선박대리점은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라고 할 수 있다.( )

<정답>(O)

<해설>대판 2019.4.11. 2016다276719.

31. 운송계약에 따른 도착지의 선박대리점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수입화물에 대한 통관절차가 끝날 때까지 수입화물을 보관하고 해상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수하인 또는 수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

<정답>(O)

<해설>대판 2019.4.11. 2016다276719.

32. 해상운송화물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그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하므로, 선박대리점이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된다.( )

<정답>(O)

<해설>대판 2019.4.11. 2016다276719.

33. 복합운송계약이란 운송물을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수단을 결합하여 운송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정답>(O)

<해설>대판 2019.7.10. 2019다213009.

34. 복합운송 과정에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어느 운송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하거나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할 수 없는 경우, 해상운송 구간이 가장 길다면 위 손해에 대한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대하여 해상운송에 관한 규정(상법 제816조)을 적용하여야 한다.( )

<정답>(O)

<해설>대판 2019.7.10. 2019다213009.

★35.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말한다. 운송물이 물리적으로

멸실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운송인의 사정으로 운송이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도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정답>(O)

<해설>대판 2019.7.10. 2019다213009.

36. 선박의 이용계약이 선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또는 항해용선계약인지 여부는 계약의 취지 및 내용, 특히 이용기간의 장단, 사용료의 고하, 점유관계의 유무 기타 임대차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정답>(O)

<해설>대판 2019.7.24. 2017마1442.

★37. 선체용선자의 경우에도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는 선박소유자에 대한 효력을 주장하여 해당 선박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정답>(O)

<해설>대판 2019.7.24. 2017마1442(선체용선에서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상법 제850조 제1항은 "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850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우선특권자가 그 이용의 계약에 반함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8. 정기용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2항의 규정이 정기용선에 유추적용되어 정기용선된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는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경매청구를 할 수 있다.( )

<정답>(O)

<해설>대판 2019.7.24. 2017마1442.

39. 정기용선계약은 선체용선계약과 유사하게 용선자가 선박의 자유사용권을 취득하고 그에 선원의 노무공급계약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특수한 계약관계로서 정기용선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물의 선적, 보관 및 양하 등에 관련된 당사적인 사항의 대외적인 책임관계에 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어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정답>(O)

<해설>대판 2019.7.24. 2017마1442.

40. 선채용선에서 선박의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선채용선자만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선박소유자와 제3자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나, 상법은 선박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850조 제2항을 두어 선채용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하고 그러한 채권은 선박을 담보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선박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은 선채용선과 정기용선이 다르지 않다.( )

<정답>(O)

<해설>대판 2019.7.24. 2017마1442.

41. 상법 제777조 제1항에서는 선채용선특권이 인정되는 채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정기용선자에 대한 그와 같은 채권에 관하여 선채용선특권을 인정하더라도 선박소유자나 선박저당권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

<정답>(O)

<해설>대판 2019.7.24. 2017마1442.

## ▣자료: 법무사 상법강의교안(하영태저: 초판1쇄) 정오표(수정)

-도서출판 무지개 제공-

면수	수정전	수정후
33면(표)	익명조합=>예고(영업연도 말 ->2개월 전)	익명조합=>예고(영업연도 말 ->6개월 전)
50면(위에서 3줄)	태와(설립사무총사),	<b>대내</b> (설립사무총사),
64면(위에서 10줄)	질권자의 청구->	<b>질권설정자</b> 의 청구->
78면(위에서 1~4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임면제(X)</li> <li>□ 자본충실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li> <li>□ 고의·중과실로 손해발생</li> <li>□ 경업금지, 회사의 기회·자산의 유용금지,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임면제(X)</li> <li>□ 자본충실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판)</li> <li>■ 책임감면(O): 정관=&gt;이사(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 초과하는 금액)/ 사외이사(최근 1년간 보수액의 3배 초과하는 금액)</li> <li>■ 책임감면(X)</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의·중과실로 손해발생</li> <li>□ 경업금지, 회사의 기화·자산의 유용금지,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li> </ul>
78면(위에서 4줄)	■ 면제금액: 이사(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 초과하는 금액), 사외이사(최근 1년간 보수액의 3배 초과하는 금액)	전체삭제
81면(위에서 4줄)	회사가 퇴직한~	회사가 퇴직한~
87면(위에서 3줄)	효력이 발행한~	효력이 발생한~
91면(위에서 6줄)	실권주의 발생:	실권사채의 발생:
92면(표)	설립->설립무효의 소(O)	설립->설립무효의 소(O)
	이사->사원총회의 승임(O)	이사->사원총회의 승인(O)
	감사->임의기관(X)	감사->필수기관(X)
93면(아래에서 7줄)	보험자: 특약(X)->지급받고~	보험자: 특약(X)->보험료 지급받고~
117면(아래에서 6줄)	법인명칭의 기재(O)+대표기관 날인(O)+대표기관의 기명날인(X)	법인명칭의 기재(O)+법인직 인날인(O)+대표기관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X)
119면(위에서 8줄)	확정일출급·발행일자 후 정가 출급의 이자문구	확정일출급·발행일자 후 정 기출급환어음의 이자문구
119면(아래에서 6줄)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확정 일 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환어 음; 확정일 출급환어음
120면(위에서 11줄)	/지급무담보 기재(X)->기재 (O)->무의적 기재사항(O)	/지급무담보 기재(O)->무의 적 기재사항(O)
201면(위에서 5줄)	(O) 위탁매매인의 일반상사유 치권 행사~	(O) 위탁매매인의 특별상사 유치권 행사~
232면(위에서 12줄)	발행주식의 99%를 소유한~	발행주식의 99%를 소유한~
317면(아래에서 4줄)	~주식을 양도한 자는~	~주식을 양수한 자는~
439면(위에서 14줄)	<조문기출>	<판례기출>
454면(아래에서 3줄)	<조문기출>	<판례기출>